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 조기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해산 승인안 검토보고서

1. 제안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남부내륙철도 市·郡 행정협의회의 각지차체별 존치여부 의견 수렴결과 해산이 결정됨에 따라 『지방자치법』 제158조에 따라 협의회 해산을 위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협의회 명칭 : 『남부내륙철도추진 市·郡 행정협의회』

○ 근　　거 : 『지방자치법』 제152조

○ 구성현황 : 9개 시·군

- 경상북도 : 김천시, 성주군, 고령군
- 경상남도 : 합천군, 진주시, 의령군, 고성군, 통영시, 거제시

4. 추진상황

○ 2016. 04. 01 ~ 04. 15 : 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 및 규정 협의

○ 2016. 12. 15 : 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규약 및 공동부담금 집행 규정 고시

※ 공동부담금 총금액 : 90,000천원 (성주군 : 10,000천원)

○ 2019. 04. 08 :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행정협의회 향후 운영방안 문의

☞ 존치 여·부는 시·군별 회신 결과에 따라 결정

○ 2019. 04. 19 : 우리군 운영방안 회신

- 남부내륙철도 市·郡 행정협의회 존치

5. 행정협의회 해산 결정

○ 행정협의회 운영방안 의견 수렴 결과

- 존치의견 4개 시·군 : 성주군, 고령군, 진주시, 거제시
- 해산의견 5개 시·군 : 김천시, 합천군, 의령군, 고성군, 통영시

☞ 행정협의회 설립목적 달성 및 과반수 이상의 의견에 따라 해산 결정

6. 향추 추진계획

○ 행정협의회 해산 의회 승인 ⇒ 고시

(행정협의회 구성·운영 규약 및 공공부담금 집행 규정 폐지)

○ 비영리단체법인 승인 취소 ⇒ 국세청
○ 공동부담금(90,000천원) 정산(성주군 10,000천원)

7. 검토의견

○ 본 규약 해산 승인안은 2019. 01. 29.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여, 각 지자체별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해산이 결정되어, 「지방자치법」제158조에 따라 협의회 해산을 위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2016년 경상북도 3개 시·군(김천시, 성주군, 고령군) 및 경상남도 6개 시·군(합천군, 진주시, 의령군, 고성군, 통영시, 거제시)으로 구성되었으며, 90,000천원의 공동부담금 (성주군:10,000천원)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
○ 행정협의회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각 지자체별 의견 수렴 결과 존치 의견 4개 시·군(성주군, 고령군, 진주시, 거제시), 해산 의견 5개 시·군(김천시, 합천군, 의령군, 고성군, 통영시)으로 과반수 이상의 결정에 따라 행정협의회의 해산이 결정되었으며.

○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158조 행정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 사항으로 본 규약안의 해산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